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123호 2019. 8. 9.(금)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69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1
○ 옥천군 공고 제2019-69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 옥천군 공고 제2019-702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 옥천군 공고 제2019-707호 옥천군 도로명 변경 심의결과 공고 13
○ 옥천군 공고 제2019-70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옥천군 공고 제2019-710호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 옥천군 공고 제2019-719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옥천군 공고 제2019-720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옥천군 공고 제2019-72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56
○ 옥천군 공고 제2019-726호 평촌소하천정비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66
○ 옥천군 공고 제2019-730호 공인 등록 공고 76
○ 옥천군 공고 제2019-731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77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공고 제 2019 - 69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옥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옥천군수(도시교통과)

다. 사 업 구 간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34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시설구분	시설명	사업명	사업의 규모	비고
공공청사	공공청사 15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	· 면적 A = 36,107㎡	
공공청사	공공청사 16		· 면적 A = 17,123㎡	
공공청사	공공청사 17		· 면적 A = 21,604㎡	
공공청사	공공청사 18		· 면적 A = 14,728㎡	
공공청사	공공청사 19		· 면적 A = 9,487㎡	
교통시설	도로 (중로3-37호선)		· 연장 L = 330m · 폭 B = 12.0m · 면적 A = 4,032㎡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23-6번지 외 15필지

나. 지장물건 :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9년 9월 중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평가기관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도지사,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8. 2 ~ 2019. 8. 19(17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2)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토지소재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각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서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부. 끝.

의 견 서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옥 천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한 사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군	읍	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권리	성명	주소	
1	옥천	옥천	문정	323-6	전	193	193	최종억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06, 113동 1102호(가장동,삼성래미안아파트)	1/2				
								최종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 41번길 20, 105호(수동)	1/2				
2	옥천	옥천	문정	323-7	전	91	91	최종억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06, 113동 1102호(가장동,삼성래미안아파트)	1/2				
								최종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 41번길 20, 105호(수동)	1/2				
3	옥천	옥천	문정	346-1	전	32	32	조판식	옥천읍 금장로 111		근저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옥천군지부)	
4	옥천	옥천	문정	346-2	전	231	231	조판식	옥천읍 금장로 111		근저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옥천군지부)	
5	옥천	옥천	문정	329	과	3,017	3,017	장종선	옥천읍 장야리 242-19		근저당권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7	
											지상권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58-14	
											근저당권	옥천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21	
6	옥천	옥천	문정	330-2	전	1,653	1,653	장종국	옥천읍 문정리 430-1 하늘빛아파트 101-603호					
7	옥천	옥천	문정	331	전	2,294	2,294	박금성	대전 대덕구 석봉동 177-2서우아파트 101동 805호					
8	옥천	옥천	문정	333	전	399	399	최승묵	옥천읍 장야리 263					
9	옥천	옥천	문정	340-3	임	4,626	1,822	서병준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43 계룡아파트 3동 1004호					
10	옥천	옥천	문정	340-1	임	1,715	836	최승묵	옥천읍 장야리 263					
11	옥천	옥천	문정	340-2	임	1,007	1,007	최승묵	옥천읍 장야리 263					
12	옥천	옥천	문정	341-1	전	1,871	1,871	육옥순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 457	166/1871				
								공	옥천군	1705/1871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군	읍	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권리	성명	주소	
13	옥천	옥천	문정	332-3	임	688	688	조규창	옥천읍 문정리 23					
14	옥천	옥천	문정	332-2	임	661	661	조산천	옥천읍 금구리 59					
15	옥천	옥천	문정	345-14	답	2,095	28	조산천	옥천읍 금구리 59					
16	옥천	옥천	장야	235-26	전	132	132	전학진	옥천읍 장야리 133	1/3				
								전일한	옥천읍 장야리 253-10	1/3				
								전전양부	옥천읍 죽향리 64	1/3				
						이	하	여	백					

옥천군 공고 제 2019-69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8. 9.

옥 천 군 수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30. ~ 8. 13.(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차량 내역

차량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 명령일자	주요 운행지역	운행정지 명령사유
93소7805	신덕근	포터II	19.7.30.	청주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관리팀(043-730-3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19-702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0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사고 예방지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2,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707호

옥천군 도로명 변경 심의결과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옥천군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공고일자 : 2019년 8월 2일

2.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해당 읍·면 게시판

3. 공고내용 : 옥천군 도로구간 도로명변경 심의사항(붙임 내역 참조)

4. 도로명 변경 절차

예비도로명 부여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지역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주소사용자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고시 및 주소사용자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공고 및 주소사용자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043-730-3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내역 1부.

2. 도로명 변경 조서 5부. 끝.

붙임 1

□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명의 변경사유	도로명의 부여사유	심의 일자	심의 방법	심의 결과	비고
1	변경전	비야대정로1길	주민요구, 군민불편도로명 7자리이상	행정리명칭(감로리)를 반영하여 부여	2019. 7.19.	회의 개최	원안가결 위원회 총원 : 13명 – 가 : 7명 – 부 : 0명 – 불참 : 5명	
	변경후	감로길						
2	변경전	옥천동이로, 동부로(종속도로)	1개도로 2개의 도로명 부여, 100m	주택단지명칭을 반영하여 부여				
	변경후	장야애뜰길						
3	변경전	문장로3길, 장야1길	행정리명칭(감로리)를 반영하여 부여	문장로 주요도로에세 일련번호 부여				
	변경후	문장로5길						
4	변경전	성왕로(일부)	행정리명칭(감로리)를 반영하여 부여	대청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변경후	대청로1길						
5	변경전	양저로 종속도로	행정리명칭(감로리)를 반영하여 부여	행정구역(고당)를 이용하여 부여				
	변경후	고당로4길						

붙임 2 〈도로명 변경조서 및 도면〉

1 변경 예비도로명 : 감로길

조서	현행 도로명	변경 예비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비야대정로1길	감로길	길	군북면	증약리 455-34	증약리 46-1	1200	20	20	1→120	행정리명칭(감로리)을 반영하여 부여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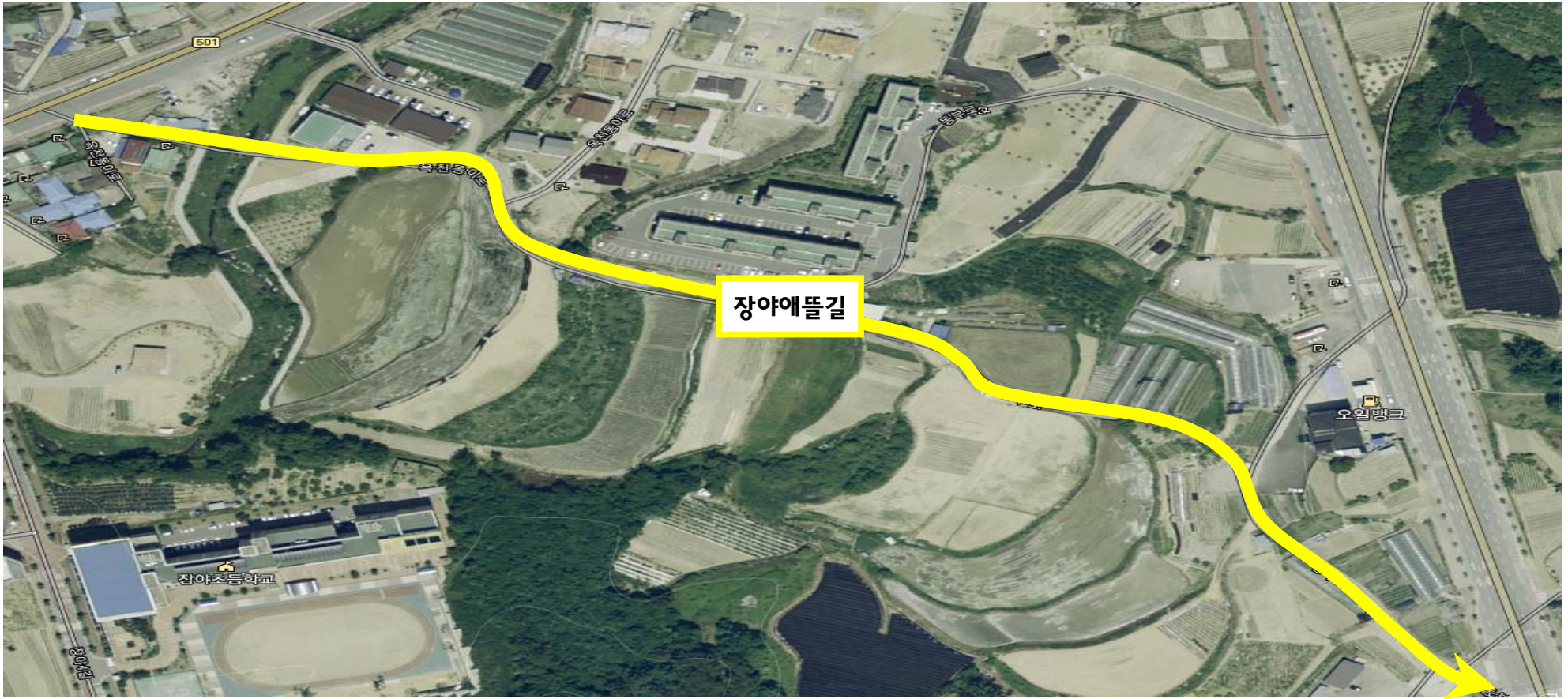


〈도로명 변경조서 및 도면〉

2 변경 예비도로명 : 장야애뜰길

조서	현행 도로명	변경 예비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옥천동이로, 동부로(종속도로)	장야애뜰길	길	옥천읍	장야리 239-1	장야리 186	620	5	20	1→62	주택단지명칭을 반영하여 부여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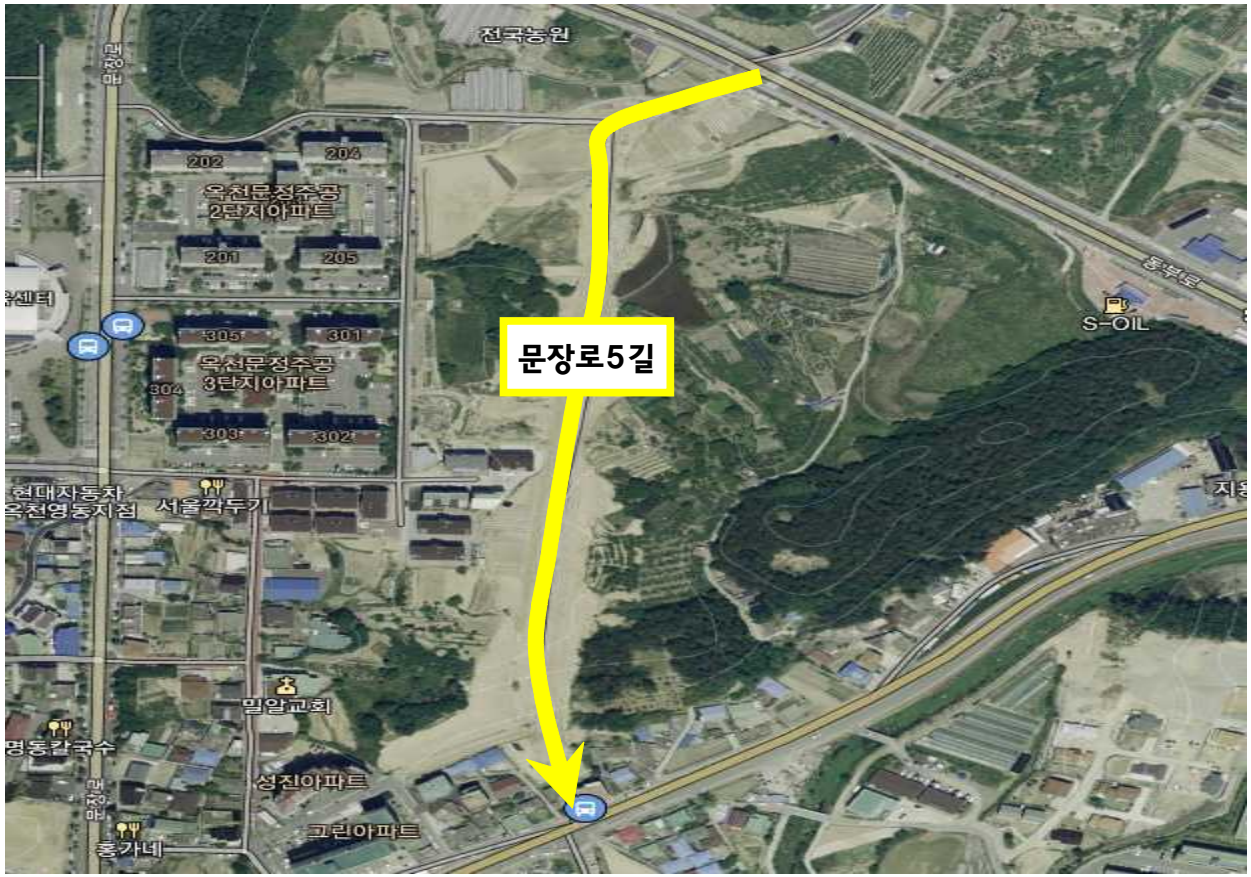


〈도로명 변경조서 및 도면〉

3 변경 예비도로명 : 문장로5길

조서	현행 도로명	변경 예비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문장로3길, 장야1길	문장로5길	길	옥천읍	문정리 400	장야리 255-3	570	15	20	1→58	문장로 주요도로에서 일련번호 부여	

현황도면



〈도로명 변경조서 및 도면〉

4 변경 예비도로명 : 대청로1길

조서	현행 도로명	변경 예비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성왕로	대청로1길	길	안내면	장계리 193-1	인포리 산42-14	1260	10	20	1→126	대청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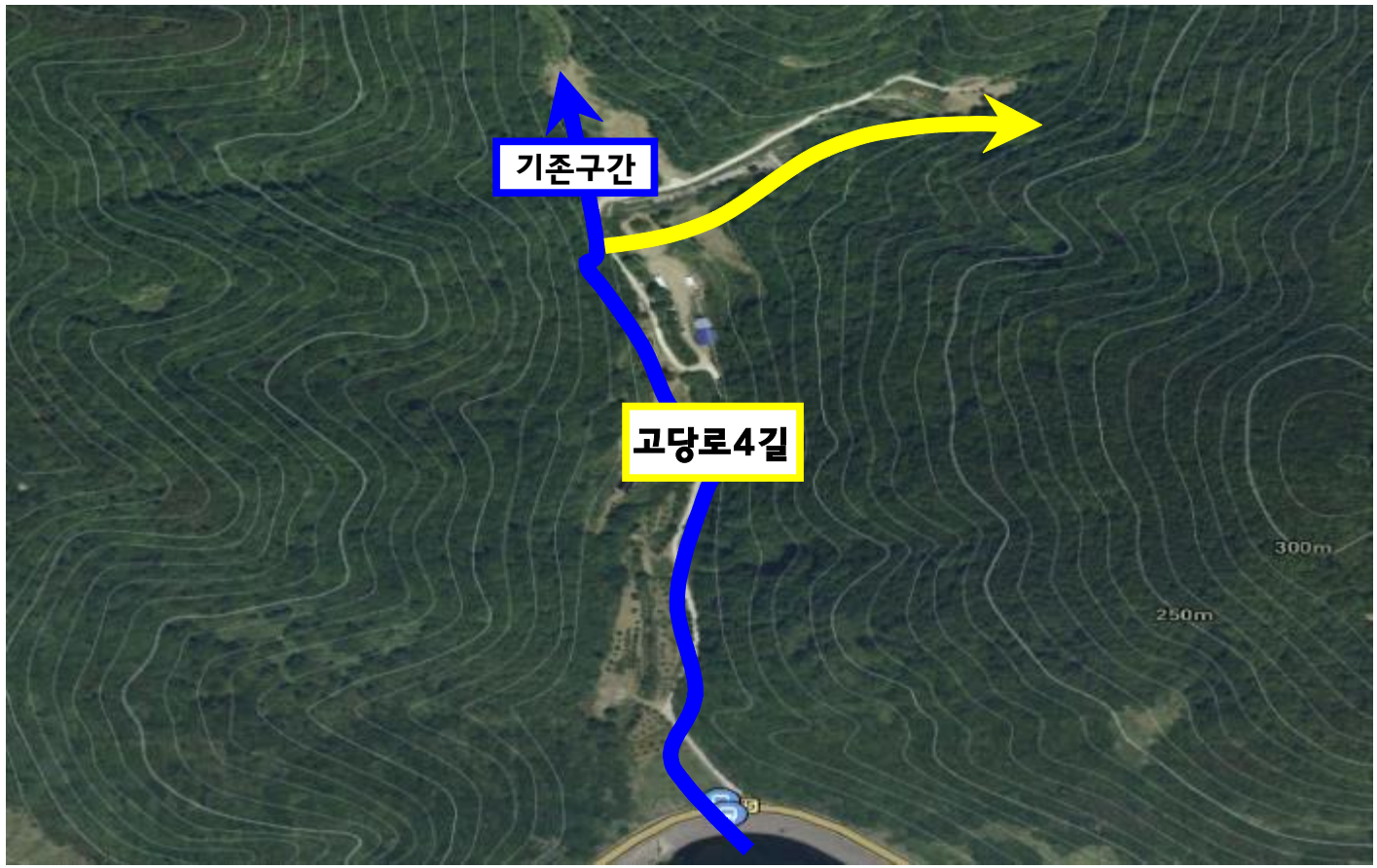


〈도로명 변경조서 및 도면〉

5 변경 예비도로명 : 고당로4길

조서	현행 도로명	변경 예비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양저로 종속도로	고당로4길	길	청성면	고당리 27-2	고당리 13	730	5	20	1→74	행정구역명(고당)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부여	

현황도면



옥천군 공고 제2019-70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 사항 반영, 중복 조항 삭제 및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고,

○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간병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명확화: 제1조(목적)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명시된 조항 삭제

가. 안 제9조(출장공무원)

나. 안 제15조(연가일수)

다. 안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라. 안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 및 제2항

마. 안 제20조(공가)

바. 안 제21조(특별휴가) 제4항, 제11항, 제12항 및 별표5(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간병휴가 조항 신설

가. 안 제21조(특별휴가) 제13항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1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

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동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⑬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개인 연가 소진 시에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입 양	본인	20일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삭 제>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

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친족의 범위는 별표 5의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 제>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 ---------- ----------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 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

	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 설>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동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신 설>	⑬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개인 연가 소진 시에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 710호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표창 조례 및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 조례명 일괄 변경 및 개정조례 사항 반영

가. (변경 전) 「옥천군포상조례」를 (변경 후) 「옥천군 표창 조례」로 일괄 변경

나. 안 제3조(선발)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 상위 규정(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상의 특혜 조항 삭제

가. 안 제4조(인사상의 특혜)

4.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실과 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어서의”를 “있어서”로, “대상자의행정 직무내용”을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옥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를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로, “자도”를 “사람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 제18676호)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군 인사위원회”를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1”을 “모

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 상여금은”을 “때에 상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여금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를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 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옥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8676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실과소장 ----------. ② ---------- 있어서 ----------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 ③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 사람도 ----------. ----------에 따른 ----------.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3조(선발) ---------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	<삭 제>

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로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 ---------- ---------- 다음 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은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때에 상여금 ----------. ----------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1. ~ 4.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 719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 정비(안 제13조)

가.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신설

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재해 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기준 최대 5천만 원 보조금 상향 조정, 5년 이내 동일 항복 지원 제외 삭제(안 제14조)

○ 기존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5조)

4. 개정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다만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10.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재해 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7호) 후단 중 “옥상”을 “옥상 방수 또는”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13조제2항1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 금액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3천만원을”을 “5천만 원을”로, “수 없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를 “제1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제14조 관련)

세대수별	지원금상한액	지원비율	비고
40세대 미만	20,000천원	사업비의 85%	
40~150세대 미만	30,000천원	사업비의 70%	
150세대 이상	50,000천원	사업비의 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삭 제>
4.·5. (생 략)	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유지 보수	<삭 제>
7. 옥상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지붕(층고1.8m 이하) 설치	5. 옥상 방수 또는 ----------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다만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신 설>	10.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11. 택배보관함 설치·보수	<삭 제>
제14조(지원기준)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지원기준)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 금액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소요 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소요비용 전액의 범위에서 지원	
2. 소요 비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이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지원 보조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5년	② ---------- 5천만원---------- ---------- ---------- 수 --------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 ---- 제1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1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심의위원회----------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심의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720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손해배상 부분) 행안부 자치법규과-2935호(2018.12.20.), 도 법무혁신담당관-8018호(2019.6.20.), 옥천군 기획감사실-13260호(2019.7.2.)에 따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오타 및 띄어쓰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 ·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④ 삭제

○ 조례명 (띄어쓰기 적용)

○ 제1조 (띄어쓰기 적용)

○ 제5조② (근거조항 ③으로 수정)

○ 제17조② (띄어쓰기 적용)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t90804@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32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전화 043-73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조제3항 ---------- --------.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군민자전거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⑥ (생 략)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의 위탁) ①（생　략）	제17조(관리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72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문정**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년 8월 12일

옥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문정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옥천군수(도시교통과)

다. 사 업 구 간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일원

라.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확장 L= 0.57㎞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0-7번지 외 50필지

나. 지장물건 :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9년 09월 중 개별통지(사전절차 이행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평가기관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8. 12. ~ 2019. 8. 28.(16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토지소재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각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문정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옥 천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집 계

구 분	국유지				사유지				총 계				비 고
	필지수	편입면적(㎡)			필지수	편입면적(㎡)			필지수	편입면적(㎡)			
		계	도로내	도로외		계	도로내	도로외		계	도로내	도로외	
계	34	15,111	13,558	1,553	17	1,304	784	520	51	16,415	14,342	2,073	
전	-	-	-	-	2	50	5	45	2	50	5	45	
답	2	474	434	40	8	591	534	57	10	1,065	968	97	
임야	-	-	-	-	2	427	18	409	2	427	18	409	
하천	-	-	-	-	-	-	-	-	-	-	-	-	
구거	6	476	231	245	-	-	-	-	6	476	231	245	
공장	-	-	-	-	-	-	-	-	-	-	-	-	
잡종지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대지	1	28	28	-	5	236	227	9	6	264	255	9	
도로	24	14,115	12,865	1,250	-	-	-	-	24	14,115	12,865	1,250	
유원지	-	-	-	-	-	-	-	-	-	-	-	-	
가지번	-	-	-	-	-	-	-	-	-	-	-	-	
제방	-	-	-	-	-	-	-	-	-	-	-	-	
묘지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특장용지	-	-	-	-	-	-	-	-	-	-	-	-	
공한지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학교	1	18	-	18	-	-	-	-	1	18	-	18	
주차장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창고	-	-	-	-	-	-	-	-	-	-	-	-	
유수지	-	-	-	-	-	-	-	-	-	-	-	-	
양어장	-	-	-	-	-	-	-	-	-	-	-	-	
수도용지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체육용지	-	-	-	-	-	-	-	-	-	-	-	-	
사적지	-	-	-	-	-	-	-	-	-	-	-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작성함.

편 입 용 지 조 서 (전 체)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유자/성명		비 고
	읍	리	지 번			계	도시계획 도로내	도시계획 도로외	성명	주 소	
1	옥천	삼양	126-5	도	5,484	6		6	국	국토교통부	
2	옥천	삼양	229-9	구	162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옥천	삼양	126-8	도	1,121	19		19	국	국토교통부	
4	옥천	문정	488-15	구	92	47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옥천	문정	247	학	23,270	18		18	국	충청북도교육감	
6	옥천	문정	280-3	대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7	옥천	문정	280-4	도	161	127	127		국	국토교통부	
8	옥천	문정	280-7	대	82	82	82		한경구 외2인	옥천읍 금구리 236-44 가화빌라102-12	
9	옥천	문정	282-9	대	188	188	188		한경구 외2인	옥천읍 금구리 236-44 가화빌라102-12	
10	옥천	문정	268-2	도	2,400	2,029	2,013	16	국	충청북도	
11	옥천	문정	492-1	도	3,278	2,507	2,507		국	국토교통부	
12	옥천	문정	280-2	도	618	618	618		국	충청북도	
13	옥천	문정	267-9	도	18	18	18		국	옥천군	
14	옥천	문정	266-3	도	68	68	68		국	옥천군	
15	옥천	문정	282-8	대	7	7	7		행복담기주식회사	옥천읍 문정리 282-1	
16	옥천	문정	236-2	도	696	696	696		국	옥천군	
17	옥천	문정	264-4	도	283	283	283		국	옥천군	
18	옥천	문정	268-3	도	392	392	392		국	옥천군	
19	옥천	문정	286-8	도	36	12		12	국	옥천군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m²)			소유자/성명		비고
	읍	리	지번			계	도시계획 도로내	도시계획 도로외	성명	주소	
20	옥천	문정	241-4	전	350	45		45	김재분	옥천읍 금구리 91	
21	옥천	문정	234-3	대	604	1		1	김숙이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135, 417동 1003호	
22	옥천	문정	241-3	도	25	19	5	14	국	충청북도	
23	옥천	문정	235-7	도	70	15		15	국	옥천군	
24	옥천	문정	산18-1	임	7,934	25	7	18	한순영 외1인	대전 서구 월평동 502 월십마을 113-605	
25	옥천	문정	산19-5	도	512	512	512		국	옥천군	
26	옥천	문정	산19-4	도	298	298	298		국	충청북도	
27	옥천	문정	산19-2	임	8,568	402	11	391	김치광	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379	
28	옥천	문정	242-1	도	479	479	479		국	충청북도	
29	옥천	문정	242-2	도	195	125	119	6	국	옥천군	
30	옥천	문정	108-3	전	76	5	5		김정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한로36번길21, 103동 601호	
31	옥천	문정	108-2	도	466	49	49		국	충청북도	
32	옥천	문정	109-1	도	1,222	669	669		국	충청북도	
33	옥천	문정	109-3	도	85	62		62	국	충청북도	
34	옥천	문정	125-3	도	302	2		2	국	국토교통부	
35	옥천	문정	496-2	구	84	84		84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옥천	문정	498	구	28,200	12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옥천	문정	119	도	4,866	4,566	3,992	574	국	국토교통부	
38	옥천	문정	123-1	답	131	12		12	김인숙	옥천읍 가화3길 18, 102동 206호	
39	옥천	문정	115-7	도	672	505	271	234	국	옥천군	
40	옥천	문정	118-6	답	22	22	22		이상훈	옥천읍 중앙로 182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유자/성명		비 고
	읍	리	지 번			계	도시계획 도로내	도시계획 도로외	성명	주 소	
41	옥천	문정	117-7	답	111	111	111		송자영	서울 용산구 소월로38가길 9-1	
42	옥천	문정	117	답	213	26		26	송자영	서울 용산구 소월로38가길 9-1	
43	옥천	문정	116	답	478	2		2	정연자	옥천읍 상야1길 31-42	
44	옥천	문정	116-4	답	239	239	239		정연자	옥천읍 상야1길 31-42	
45	옥천	문정	114-1	답	377	18		18	전진표	옥천읍 금구리 5-8	
46	옥천	문정	114-6	답	162	162	162		전진표	옥천읍 금구리 5-8	
47	옥천	문정	113-1	답	160	40		40	국	옥천군	
48	옥천	문정	113-10	답	484	484	484		국	옥천군	
49	옥천	문정	488-5	구	6,129	175	173	2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옥천	문정	113-5	대	649	8		8	장홍모	옥천읍 대천리 548	
51	옥천	죽향	247-2	구	1,272	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101,414	16,415	14,342	2,073			

지 장 물 조 서

물건번호	소재지		측점	물건의 종류	지번	소유자	비고
	읍	리					
1	옥천	문정	NO.2+8-3+19	담장L=13.0m, 조립식 A=19.5m2	232-2, 232-9	한경구 외2인	
2	"	"	NO3+19-5+13	수도, 변압기, 비석, LPG 가스통, 정문, 담장 L=23.0m	230-2, 232-1	행복담기 주식회사	
3	"	"	NO.5+3-7+15	비석, 휀스L=38.0m, 정문	234-1, 230-2, 235-2	농어촌공사	
4	"	"	NO.4+0-5+11	철제휀스 L=34.0m	256-3, 256-1		
5	"	"	NO.5+15	담장 L=2.0M	254-4		
6	"	"	NO.14+0	자전거 거치대	242-2	옥천군	
7	"	"	NO.14+17	비석	109-1		
8	"	"	NO.15+1	비석	119		
9	"	"	NO.18+10	휀스 L=4.0m	119		
10	"	"	NO.18+14-19+18	휀스 L=33.0m	118,118-6, 119	이상훈	
11	"	"	NO.21+14-24+0	휀스L=112.0m, 조립식 건물2동, 컨테이너 1동	115, 115-4	정연자	
12	"	"	NO.26+0	버스정차대	113-10	옥천군	

수 목 보 상 조 서

번호	소재지	위치	방향	수 목	지번	소유자	비고
1	옥천읍 문정리	NO.1+0~NO.1+17	좌	영산홍(H0.5)37주, 회양목(H0.3)5주	230-4, 230-2	한경구 외2인	보상
2	옥천읍 문정리	NO.2+8~NO.4+0	좌	장미(H1.0)7주, 화초(H0.3)25주, 조경수(H3.0)3주, 과실수(H1.5)1주, 감나무(H5.0)1주, 사철나무(H0.3)18주	230-2	한경구 외2인	보상
3	옥천읍 문정리	NO.4+0~NO.5+13	좌	단풍나무(H4.0)2주, 영산홍(H0.5)40주, 향나무(H4.0)4주, 느티나무(B0.4)1주	230-2	주식회사 행복담기	보상
4	옥천읍 문정리	NO.5+13~NO.7+15	좌	장미(H1.0)7주, 화초(H0.3)25주, 조경수(H3.0)3주, 과실수(H1.5)1주, 감나무(H5.0)1주, 사철나무(H0.3)18주	230-2, 235-2	한국농어촌공사	보상
5	옥천읍 문정리	NO.10+9	좌	느티나무(B0.5)1주	235-2		보 상
6	옥천읍 문정리	NO.18+11	좌	조경수(H1.0)10주	119		보 상

개 인 표 지 판 조 서

번호	소재지	위치	방향	수량	표지판	지번	소유자	비고
1	옥천읍 문정리	NO.2+8	좌	1	퍼펙트 외국어 전문학원 광고 표지판	232-1	퍼펙트외국어 전문학원	이설
2	"	NO.4+11	좌	1	주식회사행복담기 공장 표지판	230-2	주식회사 행복담기	이설
3	"	NO.5+5	좌	1	주식회사행복담기 공장 표지판	230-2	주식회사 행복담기	이설
4	"	NO.6+17	좌	1	한국농어촌공사 표지판	230-2	한국농어촌공사	이설
5	"	NO.13+6	우	1	육영수,정지용 생가 안내표지판	242-1	옥천군	이설
6	"	NO.15+6	우	1	각 방향 표지판	119	옥천군	이설
7	"	NO.18+9	좌	1	식당광고표지지판	119	언양참숯갈비 식당	이설
8	"	NO.26+5	좌	11	버스정류장 표지판	113-10	옥천군	이설
9	"	NO.27+8	좌	1	현수막 표지판	113-10	옥천군	이설
10	"	NO.27+10	우	1	옥천성모병원 방향표지판	119	옥천성모병원	이설
11	"	NO.28+0	좌	1	현수막 표지판	113-10	옥천군	이설
	합 계			21				

옥천군 공고 제2019 - 726호

평촌소하천정비공사 보상계획(변경)공고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이원 평촌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변경) 공고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9.

옥 천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하천 등급	사 업 량	사업기간
평촌소하천 정비공사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 평계리 일원	소하천	소하천정비 L=1.475km	2018. 01. ~ 2021. 12.

2. 사업 시행자 : 옥천군수

3. 보상대상 :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4.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8. 12. ~ 8. 27.(15일간)

나. 열람 및 의의신청장소 : 옥천군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043-730-3523, 3526)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보상방법 등 : 당초 보상계획 공고 안내, 현장 감정 후 산정된 보상금의 보상협의 요청 공문 안내 완료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옥천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내용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043-730-3523, 3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붙임] 토지 및 지장물조서

▣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분할후 지 번	현황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총계		70필지			73,403.0			14,666.0						
1	이원	수묵	651-1	도	118	651-1	도	118.0	미등기		박래영	군서 하동		전필
2	이원	수묵	618-2	도	43	618-2	도	43.0	미등기		허상순	(사정)		
3	이원	수묵	651	답	256	651-4	답	15.0	박OO외 2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14, ***				
									박OO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				
									박OO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				
4	이원	수묵	651-2	답	1,499	651-5	답	293.0	박OO외 2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				
									박OO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93, ***				
									박OO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14, ***				
5	이원	수묵	650-1	답	653	650-4	답	52.0	육OO 외 2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75, ***				
									육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송파 구청		가압류	
											송파 세무서		가압류	
											서울보증 보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육OO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6	이원	수묵	649-1	답	2,623	649-5	답	298.0	진OO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7	이원	수묵	643-2	도	36	643-2	도	36.0	육OO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전필
8	이원	수묵	642-2	도	36	642-2	도	36.0	육OO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전필
9	이원	평계	770-3	도	129	770-3	도	57.0	미등기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10	이원	평계	770-2	도	7	770-2	도	7.0	미등기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11	이원	평계	769-3	도	3	769-3	도	3.0	육OO 외 2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12	이원	평계	769-2	도	76	769-2	도	76.0	육OO 외 2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육OO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육OO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				
13	이원	평계	763-2	도	99	763-2	도	31.0	미등기		육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14	이원	평계	691	답	843	691-1	답	387.0	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분할후 지 번	현황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5	이원	평계	690	천	162	690	답	99.0	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전필
							천	63.0						
16	이원	평계	689	답	1,557	689-1	답	281.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17	이원	평계	695-2	답	1,207	695-4	답	39.0	육OO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18	이원	평계	696	답	2,440	696-1	답	104.0	육OO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19	이원	평계	697	답	2,093	697-1	답	295.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4	근저당권설정	
20	이원	평계	183	답	443	183-1	답	306.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1	근저당권설정	
21	이원	평계	181	답	1,164	181-1	답	105.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1	근저당권설정	
						181-2	답	9.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1	근저당권설정	
22	이원	평계	180	답	1,491	180-1	답	1.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1	근저당권설정	
23	이원	평계	182	답	393	182	답	393.0	문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전필
24	이원	평계	220	답	1,336	220-1	답	129.0	공OO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5	이원	평계	219	답	1,197	219-1	답	187.0	공OO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6	이원	평계	221	전	2,096	221-1	전	69.0	공OO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7	이원	평계	218	전	69	218	전	69.0	육OO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전필
28	이원	평계	217	답	1,993	217-1	답	441.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이원농업협동조합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4	근저당권3회, 지상권1회	
							천	48.0						
29	이원	평계	216	답	1,028	216-1	답	402.0	공OO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				
30	이원	평계	215	답	549	215-1	답	110.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이원농업협동조합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4	근저당권3회, 지상권1회	
31	이원	평계	214-1	답	968	214-3	답	137.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32	이원	평계	214	대	156	214-2	대	13.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33	이원	평계	859-2	답	342	859-4	답	236.0	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사망 2002	
34	이원	평계	858	답	536	858-1	답	370.0	육OO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도	98.0						
35	이원	평계	857	답	469	857-1	답	18.0	육OO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36	이원	평계	855	답	704	855-1	답	176.0	육OO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분할후 지 번	현황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37	이원	평계	854	전	1,098	854-2	전	317.0	육OO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38	이원	평계	852	답	1,253	852-1	답	424.0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천	52.0						
							도	64.0						
39	이원	평계	851	답	2,086	851-1	답	1,212.0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40	이원	평계	841	답	1,382	841-1	답	21.0	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41	이원	평계	840	답	387	840-1	답	140.0	미등기		김창길 외 2인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117		
											김대군			
											김홍준			
42	이원	평계	839-1	답	1,673	839-3	답	7.0	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43	이원	평계	836-1	답	2,698	836-3	답	1,446.0	조OO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44	이원	평계	640-1	임	7,197	640-3	임야	6.0	연안이씨통덕당덕암공파종중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	이대영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	대표	
45	이원	평계	642-1	답	20	642-1	답	20.0	조OO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전필
46	이원	평계	836-2	답	545	836-2	답	545.0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사망 1999	전필
47	이원	평계	642-2	전	873	642-4	전	43.0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이원농업협동조합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1	근저당권2 지상권1	
						642-5	전	304.0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48	이원	평계	642-3	전	1,339	642-6	전	440.0	조OO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				4-16 상속
49	이원	평계	641	전	1,997	641-1	전	58.0	미등기		이상천	용방		
50	이원	평계	643-1	전	678	643-3	전	561.0	조OO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				
51	이원	평계	643-2	답	476	643-4	답	3.0	조OO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				
52	이원	평계	680	답	747	680-1	답	167.0	김OO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53	이원	평계	679	답	410	679-1	답	10.0	김OO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김OO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			사망 2015	
54	이원	평계	678	답	1,306	678-1	답	91.0	박OO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43번길 ***				
55	이원	평계	677	답	1,484	677-1	답	156.0	서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사망 1999	
56	이원	평계	676	답	1,660	676-1	답	136.0	서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사망 1999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분할후 지 번	현황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57	이원	평계	682	답	777	682-1	답	364.0	김OO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				
58	이원	평계	684	전	1,468	684-1	전	509.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59	이원	평계	184-1	답	1,289	184-4	답	400.0	육OO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도	29.0						
60	이원	평계	184-2	답	1,421	184-5	답	452.0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도	14.0						
61	이원	평계	185	답	1,689	185-1	답	191.0	임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길 ***	이원새마을금고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122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62	이원	평계	196	전	1,759	196-1	전	207.0	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63	이원	평계	197	답	132	197	답	132.0	미등기		공일석	(사정)		전필
64	이원	평계	203-1	답	1,398	203-3	답	141.0	문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도	28.0						
65	이원	평계	209-1	전	536	209-3	전	50.0	김OO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				
66	이원	평계	209	대	357	209-2	대	132.0	미등기		공사선			미등기
67	이원	평계	210-1	대	352	210-3	대	17.0	장OO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68	이원	평계	163	전	554	163-2	전	3.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69	이원	평계	164	전	1,055	164-1	전	6.0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70	이원	평계	204	전	2,493	204-1	전	118.0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보상물건	구조	수량	단위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	이원	수묵	651-4		매실나무	R5	1	주	박OO 외 2인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	육OO			
2	이원	수묵	651-5		복숭아나무	R5 (지주대포함)	29	주	박OO 외 2인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	육OO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묘목	744	주						
					철제울타리	H=1 (대문포함)	14	m						
3	이원	수묵	649-5		포도나무	묘목	130	주	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이OO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	임대자	
					복숭아나무	묘목	2,000	주						
4	이원	평계	852-1		비닐하우스	5동	361	㎡	조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관정	농업용	1	식						
					포도나무	30년생 (지주목포함)	120	주						
5	이원	평계	641-1		감나무	R10	21	주	미등기	이상천(용방)	조OO	대전시 서구 청사로 70 ***		
					호두나무	R15	1	주						
					단풍나무	R10	8	주						
					오갈피나무	R5	6	주						
					구기자나무	R5	5	주						
6	이원	평계	642-6		복숭아나무	R5	3	주	조OO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	이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복숭아나무	R3	19	주						
					복숭아나무	묘목	4,200	주						
7	이원	평계	677-1		인삼밭	3년생	202	㎡	서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뱀나무	R20	2	주						
8	이원	평계	684-1		복숭아나무	R5	12	주	공OO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 ***				
					감나무	R5	1	주						
					두릅나무	R5	5	주						
9	이원	평계	689-1		뱀나무	R50	1	주	공OO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8길 ***				
10	이원	평계	184-4		가죽나무	R8	50	주	육OO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				
					태양광울타리	집열판, 전선100M포함	1	식						
11	이원	평계	184-5		관정	농업용	1	식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12	이원	평계	184-5		펌프	이동식 (PE관50M)	1	식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일련번호	소재지				보상물건	구조	수량	단위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3	이원	평계	181-1,182 183-1,1000		비닐하우스		710	㎡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관정	농업용	1	식						
					복숭아나무	R5	30	주						
					감나무	R5	4	주						
					옻나무	R5	8	주						
					고욤나무	R5	4	주						
14	이원	평계	1000,182		뱀나무	R5	4	주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문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감나무	R5	3	주						
					복숭아나무	R15	1	주						
					복숭아나무	R5	14	주						
15	이원	평계	196-1		비닐하우스	3동	149	㎡	정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관정	농업용	1	식						
					물탱크	FRP 5톤	1	식						
					감나무	R20	1	주						
16	이원	평계	203-3		비닐하우스		77	㎡	문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동산이전비	비닐하우스내 자재	1	식						
					감나무	R10	1	주						
17	이원	평계	209-3		복숭아나무	R10	4	주	김OO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대추나무	R5	1	주						
18	이원	평계	214-1, 215-1		비닐하우스		290	㎡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이동식화장실		1	식	공OO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가죽나무	R30	21	주						
					호두나무	R5	20	주						
					복숭아나무	R5	20	주						
					감나무	R15	3	주						
					포도나무	R30	3	주						
					살구나무	R5	1	주						
19	이원	평계	214-1,215-1.217-1		물탱크	FRP 5톤	1	식						
					저온저장고		1	식						
					동산이전비	기타 잡자재	1	식						

일련번호	소재지				보상물건	구조	수량	단위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20	이원	평계	214-1 215-1217-1		비닐하우스	8동	605	㎡						
					포도나무	6년생	2	주						
					비타민나무	R2	150	주						
					체리나무	R3	111	주						
					호두나무	R4	300	주						
					자두나무	R10	12	주						
					해당화	R3	60	주						
					사과나무	R4	130	주						
					사과나무	묘목	720	주						
19	이원	평계	215		관정	굴착깊이 70m	1	식	임OO	옥천군 이원면 평계길 ***				
21	이원	평계	209-2		사과나무	R8	5	주	미등기	공OO				
					대추나무	R10	1	주						
					배나무	R8	3	주						
22	이원	평계	642-1		펌프	이동식 (PE관50M)	1	식			조OO			
23	이원	평계	642-1		펌프	이동식 (PE관50M)	1	식			조OO			
24	이원	평계	642-6		펌프	이동식 (PE관50M)	1	식			이OO			

의 견 서

【이원 평촌소하천정비공사】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옥 천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옥천군 공고 제2019 - 730호

공인 등록 공고

옥천군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등록 공인을 옥천군공인조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 등록 사유
   - 옥천군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공인 등록: 2019. 8. 9.
3. 공인 등록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비고
등록	옥 천 군 공무직징 계위원회 위원장인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고 제2019 - 731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시장으로 구역을 인정함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4. 제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옥천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

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

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옥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②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

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부터 마목과 제4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관리 등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신고·관리 등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 (임시시장 신고의 수리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시시장 신고를 수리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의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

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6조(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제32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옥천군 주차장 조례」 및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천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34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군수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②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군수를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